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1호
----------	------

2019. 2. 21.

건명	논산시 도시관리계획(하수도) 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(도시재생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2. 13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2. 13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논산시 양촌면 일원 하수량 급증 및 수계오염 우려에 따라 시설 준비를 통한 수질보전,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
- 논산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하수도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양촌 인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
- 위치 :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305-1번지 일원
- 면적 : 하수도 A=1,768m²
- 시설용량 : 390m³/일 ⇒ 700m³/일
- 시행자 : 논산시장(맑은물과)
- 목표년도 : 2020년
- 사업비 : 207억원(국비 145억원, 지방비 62억원)
- 주요 결정사항
 - 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하수도) 결정 ⇒ 시장 결정사항

□.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 10. 12 :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 신청
- 2018. 11. 06 :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 입안
- 2018. 11. 12 ~ 2019.01.10 : 논산시 관계부서(기관) 협의
- 2018. 12. 07 ~ 2018.12. 24 : 주민공람·공고
- 2019. 02. : 논산시의회 의견청취
- 2019. 03. :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19. 04. : 도시관리계획(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□ 검토의견

- 논산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하수도)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·공고등을 사전 이행하였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금회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하수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2호
----------	------

2019. 2. 21

건명	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(안)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(도시재생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2. 13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2. 13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, 유·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·발굴하고,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
- 이에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사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위치 : 논산시 도시지역 49.82km²
- 계획의 범위 : 기준년도(2016년), 목표연도(2025년)
- 세부계획 :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,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,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, 도시재생 실행방안 등

□ 추진경위

- '16.06.10 :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착수
- '17.04.06~04.14. :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(안) 주민설명회
- '18.03.27 :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(안) 주민공청회
- '18.12.10~12.20. : 논산시 관련실과 협의
- '19.02월 : 논산시 의회의견 청취
- '19.02월 :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□ 향후추진계획

- '19.03월 :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(안) 승인 신청(市→道)
- '19.03월 : 충청남도 관련실과 협의
- '19.04월 :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
- '19.05월 :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

□ 검토의견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로서 사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관련실과 협의를 이행하고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